

2006-2007

MONROE COUNTY COMMUNITY SCHOOL CORPORATION

학교 생활 안내서 (한국어판)

BACK TO SCHOOL GUIDE

THE STUDENT-PARENT GUIDE FOR
THE MONROE-COUNTY COMMUNITY SCHOOL CORPORATION
FOR THE 2006-2007 SCHOOL YEAR

Back To School Guide

(Korean Version)

© Translated by
ESL Office, Monroe County Community School Corporation
315 North Drive • Bloomington, IN 47401
Phone (812) 330-7700 • Fax (812) 330-7813
<http://www.mccsc.edu/~eslk12>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	i	의료기록 공개	15
Welcome To MCCSC	2	약의 소지와 자가 투약	15
출석은 학습의 필수입니다	3	예방 접종은 모든 학생에게 필수	15
스쿨버스 이용 안내	5	학년별 최소한의 예방 접종 기준표	17
스쿨버스 안전 수칙	5	장애아의 판단, 평가 및 배치에 관한 부모와 학생의	
학술 연구 참여에 관한 안내	7	권리	18
MCCSC 는 금연금지 구역	8	제한된 환경의 최소화	20
건강한 학교	8	훈계방침은 각 학교에 의해 정해집니다	21
옥외 휴식에 적합한 기온	8	괴롭힘	21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비공립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8	괴롭힘에 대한 신고	21
MCCS 학교 재단	9	성희롱	21
훈육 지침에 관한 안내	9	성별/ 민족적 배경/ 종교/ 장애/ 동성연애/ 신장/ 몸무게에 관한 괴롭힘	22
학부모 공지사항	9	체벌	23
후랭클린 산학 협력 체제 (The Franklin Initiative)	10	직원에 대한 협박	23
학생의 전자 정보망 이용에 관한 지침	11	정학과 퇴학에 관한 지침	23
MCCSC 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12	정학과 퇴학	23
메뉴는 학생들의 자유 선택	12	정학이나 퇴학의 기준	24
자동화된 점심 급식	12	정학 절차	25
2006-2007 학년도 점심 급식비	13	퇴학 절차	26
무료/할인 점심 급식을 위한 자격	13	장애아의 정학, 퇴학 및 격리	26
점심 급식 지원 소득 자격에 관한 기준	13	정학	26
점심 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13	퇴학	27
생활기록부	14	격리	27
약의 복용이 필요할 때	14	(교육 위원회 직원 안내)	28
		2006-2007 학년도 학사 일정 안내	30

Welcome To MCCSC

학생과 학부모님:

새 학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학년도를 고대하고 계셨을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올 해 새로운 도전을 향해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때 자녀들은 더욱 분발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부모님들이 교육의 중요성과 자녀의 성공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 "Back To School Guide" 를 주위 깊게 읽어 보시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학교의 방침과 절차에 관하여 익숙하여질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십시오. MCCSC 가 자녀분들에게 질 높은 배움의 터전을 제공하고 최고의 교육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끈임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할때 극복하기 불가능한 어려움은 없을것입니다.

MCCSC 전 직원 일동은 새학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James A. Harvey 드림

BOARD OF SCHOOL TRUSTEES

학교 이사회

Susan P. Wanzer, President
Berit Brewer, Vice President
Cheryl Brown, Secretary
Vickey Freeland, Assistant Secretary
Teresa Grossi, Member
Jim Muehling, Member
Lois Sabo-Skelton, Member

학생과 학부모님께

Monroe County Community School Corporation 이사회를 대표하여 새학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사회는 전 직원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적인 학업 성과를 기원하며, 최고의 교육환경과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재 제공되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Susan P. Wanzer, President

학교 이사회는 선출된 7 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매달 첫째 화요일에 MCCSC Administration Center 또는 학교에서 열립니다. 모든 회의는 오후 7 시에 시작되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회의 시간이나 장소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 안내 또는 변경 사항은 The Herald-Times 에 게재됩니다

MCCSC 의 회원(학부모)은 누구나 회의에 참석하여 안전에 관해 의견을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 이외에 관한 의견이나 질문등은 회의초에 하실 수 있습니다.

ESL Office

새학년 맞이 학교 생활 안내서 (Back to School Guide)의 한국어와 스페인어 번역판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저희 ESL 직원 일동은 다른 문화권에서 Monroe County Community School Corporation 에 오신 모든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MCCSC 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서 최대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학습 개인 지도, 통역 또는 학교 등록등 교육 과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oonhyun Jeon, Coordinator
이메일: eslk12@mccsc.edu
전화: (812) 330-7700
웹사이트: <http://www.mccsc.edu/~eslk12>

학교를 안전하게 !



비밀 보장

안전을 위한 학교 긴급 직통 전화
330-2494

학생이나 직원, 또는 학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신고하기 위한 수단

신고자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출석은 학습의 필수입니다

(영문판 3 페이지)

2006-2007 년도 출석에 관한 방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번역판은 곧 나올 예정입니다. 개정된 출석에 관한 방침은 영문판을 참고 하여 주십시오.

다음 사항은 Monroe County 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1. Monroe County Community School Corporation (이후부터는 MCCSC 로 칭함)에 등록된 학생은 졸업 또는 자퇴할때까지 인디애나주의 법과 본 지침에 따라 학교에 등교해야만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교사들은 매 교과 시간마다 출석 점검을 하며 결석 기록은 교무실에 보고됩니다.
3. 각 학교는 출석률이 좋은 학생에게 상을 주도록 장려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종교적인 휴일을 지키기 위한 결석은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출석 의무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법에 의해 결석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와 기록은 되지만 양해가 가능한 결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인디애나주 의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은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 b. 인디애나주 의회에 명예위원으로 참석해 줄것을 요청받았을 경우 그 기간은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 c. 중고등학생으로서 선거구의 선거위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거일에 출마자나 특정 정당을 위해 일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학생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출마자나 정당위원장, 선거 사무장, 선거구 공무원이 서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선거일 당일의 학생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학생은 결석으로 기록되지 않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d. 법정 소송에 증인으로 소환된 학생의 경우, 당일의 결석은 결석으로 기록되지 않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e. 인디애나 주 수비대로 현역 근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고등학생은 일년에 10 일을 넘지않는 한 결석으로 기록되지 않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f. 일년 중 총 120 분을 넘지않는 한도내에서 종교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부모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이는 출석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학교장의 허가는 일년간 유효하며 교육감의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g.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해를 초래할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결석은 출석부에 기록될 것입니다
5.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이 사전에 허락한 인가받은 교외수업 참가자는 출석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6. 인정되는 결석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 질병
 - b. 사고후 요양
 - c. 법정 출석 요청
 - d. 직업상 약속
 - e. 가까운 가족의 죽음
 - f. 종교적 휴일의 준수
 - g. 인디애나 내쇼날 가드로 근무
 - h. 선거구 위원으로 또는 선거 출마자의 도우미로 봉사
 - i.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의 허락을 받거나 법이 허락한 경우

7. 결석한 학생은 다시 학교에 등교한 첫날 요청하면 그동안 못한 공부를 보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는 결석한 날수와 같은 기간안에 마쳐져야 합니다.
8. 교내 정학은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못한 공부는 나중에 보충하여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9.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석: 이는 Policy 5200 과 이 안내서에 나와있는 양해된 결석을 제외한 모든 결석을 말합니다.
10. Policy 5610 에 명시된 사고를 저지른 학생은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는 정학을 받게되는데 교외 정학의 경우 변명의 여지없는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11.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결석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이 담당 교사와의 상의하에 보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중 정학을 받은 경우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은 다른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 또는 정학의 시기를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12. 학교에 결석 사유를 통보하는 것은 학부모나 후견인의 책임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13. 허가없이 결석한 모든 학생은 변명의 여지없는 결석을 한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이것이 무단 결석으로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은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다음중 하나 또는 몇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a.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이 취하는 훈육조치의 예.
 - ①. 학교의 사회복지 담당자 (social worker)와 면담
 - ②. 학부모 면담
 - ③. 방과 후 학교에 남게 함
 - ④. 교내정학
 - ⑤. 각종 특혜 박탈
 - b.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밟아 취하는 조치
(무단 결석자와 그 부모/후견인은 이 결정에 대해 상위 당국자에게 탄원할 수 있습니다.)
 - ①. 1-5 일간의 정학
 - ②. 경찰서에 알려 통지를 받은후 하루안에 무단결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함
 - c.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 취하는 조치
 - ①. 무단 결석한 수업의 등록 취소
 - ②. 퇴학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Back To School Guide (영문판)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각 학교는 현거주지 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스쿨버스 이용 안내

(영문판 3 페이지)

도보거리가 1.5 마일 이상인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과 1 마일 이상인 초등학생에게는 통학편이 제공됩니다. 유치원생의 경우 이들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없는 관계로 오전반은 등교시에만, 오후반은 하교시에만 통학편이 제공되고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반의 하교시 교통편과 오후반의 등교시 교통편은 부모의 책임에 맡기게 될 것입니다. 만일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학생의 나이를 고려해 볼때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통학편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상황을 우려하는 부모는 통학및 안전 위원회 (Transportation and Safety Committee) 를 통해 교통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후 이는 교육감에게 보고된 후 가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교통에 관한 문의는 330-7719 로 연락 주십시오.

스쿨버스 안전 수칙

안전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다음의 안전 수칙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버스가 도착하기 전>

1.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집을 나선다.
2. 보도가 없는 경우 차가 오는 방향으로 걷는다.
3. 버스 도착시간 5 분전까지 정류장에 도착한다.
4. 도로 위에 서 있지 말고 길 가에서 기다린다.
5. 주위의 사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버스에 탈 때>

1. 버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예의와 차례를 지킨다.
3. 손잡이를 이용한다.

<버스 안에서>

1. 운전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일어 서거나 돌아다니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맡아 놓지 않는다.
3. 한 좌석에 3 명이 앉으며 통로를 막지 않는다.
4. 팔, 다리, 책 등을 통로에 두지 않는다.
5. 손, 머리, 그 외 어떤 물건도 창 밖으로 내밀지 않는다.
6. 안전장치를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다.
7. 비상시 외에는 운전사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운전사는 운전엔 집중하고 도로를 주시해야만 함)
8. 운전사의 청각을 방해하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얘기한다.
9. 고함을 지르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10. 창문은 운전사가 요청할때만 열고 닫는다.
11. 어떤 형태의 담배도 피울 수 없다.
12. 차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차를 더럽히지 않는다 (쓰레기통 사용).
13. 악기는 무릎위에 놓으며 통로를 막지 않는다.
14. 스케이트 보드와 애완동물은 금지되어 있다.

<버스에서 내릴때>

1. 버스가 완전히 멈출때까지 기다린다.
2. 차례를 지키며 다른 사람의 앞을 막지 않는다.
3. 손잡이를 이용한다.
4. 계단을 잘 보며 내린다.
5. 좌우를 살펴보고 길을 건너기 전에 추월하는 차에 주의를 기울인다.

<비상시와 운전사가 자리를 비운 경우>

1.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다.
2. 비상시 이외에는 비상장치를 만지지 않는다.
3. 운전사의 상황 처리 판단을 믿는다.
4. 운전사 또는 경찰의 지시를 따른다.

**** 주: 위의 사항을 준수 하지 않는 경우 스쿨버스 이용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 협의회

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학기중 정기적으로 만나는 학부모 협의회가 있는데 이들은 학교의 각종 행사에 교직원을 도와 함께 활동을 합니다. 각 학교 대표들은 전 학교조직의 부모-교사 협의회 일원이 되어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공식적인 모임은 없으나 여러가지 교외 활동을 지원하는 클럽이 각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SCHOOL BIGS

School Bigs 는 Big Brothers Big Sisters (큰 형, 큰 누나) 를 조연자로서 맺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Fairview, Grandview, Highland Park, Summit 또는 Templeton 의 초등학교 학생에게 제공 됩니다. 학생들은 성인 자원 봉사 조연자와 학교 시간중 일주일에 1 시간 일대일로 만나게 되며, 이 모임은 담당 교사의 지도아래 이루어집니다. 각 교사, 학교장이나 사회복지 담당직원 또는 부모는 학생을 이 프로그램에 보낼 수 있으며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 (공부나 사회성 발달등) 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줄것을 조연자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여했던 부모와 교사들은 조연자들이 학생의 성적을 높이고 학교에 생활 태도를 향상시키며 자긍심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334-2828 로 연락 또는 자녀의 교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School Age Care / K-Club** 프로그램

모든 초등학교에는 방과전과 방과후 학생을 돌보아 주는 프로그램이 Extended Day Program 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본인들이 다니고있는 학교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School Age Care (SAC) 는 학부모님께 저

올해부터 3 세, 4 세, 5 세의 아동을 위한 취학전 프로그램인 READY, SET, GROW 프리스쿨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참가 아동은 8 월 1 일 까지 만 3 세가 되어야하며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Childs, Clear Creek, Highland Park, Rogers, Templeton, University 초등학교에서는 방과전 프로그램 (오전 6:30-9:00) 과 방과후 프로그램(오후 3:15-6:00) 에 추가로 매일 취학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본 프리스쿨 프로그램에는 전일제(full-time) 와 반일제 (part-time)의 선택이 가능하나, 정원이 20 명으로 제한 됩니다.

K-Club 은 Marlin 과 Unionville 의 2 초등학교에서만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일제입니다. Kindergarten Plus 는 전일제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인원 제한, 그리고 각 프로그램은 학부모님의 비용으로 운영 된다는 점, 등록은 매년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재등록 하셔야한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에 등록이 완료되는데는 24 시간이 소요됩니다. CCDF 접수합니다. 등록과 비용에 관한 문의는 SAC 사무실 (330-7702)로 연락 주십시오 (오전 8:00-오후 4:30).

학생 사고보험

학부모: 학생 사고 보험은 학부모님의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각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생 사고 보험의 계획과 비용에 관한 안내서가 각 학교마다 비치되어 있으므로 혹시 자녀를 통해 받지 못했을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에 가입을 원할 경우, 안내서안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보내시면 됩니다.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동적으로 학교의 책임이며 학교가 비용부담을 할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MCCSC 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모든 사고가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생 사고 보험이 모든 학생에게 권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사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등 선택 조건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SPECIAL EDUCATION SERVICES)

(영문판 4 페이지)

자녀의 학업 또는 행동 발달 상황에 염려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학부모는 먼저 담임교사와 의논을 하여 주십시오. 교사는 부모와 함께 학생에게 도움이 될만한 조치를 모색할 수도 있고 교사 협조회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 협조회란 위와 같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교사들의 모임으로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도움장치가 있으므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자하기 전에 이들을 먼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문제가 지속될 경우 특수교육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 지게 되는데 미연방및 인디애나 주법에 따라 학생이 이를 받을 자격 또는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각 학교에서 밟아야 합니다. 이 첫단계에는 부모, 교장, 교사가 만나 학생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하는데 만일 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학생의 평가전에 부모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후 부모와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종류의 특수 교육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교육은 MCCSC 의 모든 학교에서 제공되며 가능한 한 학교내 학교의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 지는데 3 살 부터 21 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MCCSC 의 학생과 직원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수 교육은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지원 제도의 하나이며 서비스는 학생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문의는 349-4756 또는 330-7700 으로 하여 주십시오.

학술 연구 참여에 관한 안내

대학이 있는 곳에서 사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교육적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MCCSC 의 직원과 교사에게 유익한 기회인데 이러한 기회는 우리 학생들의 평가 활동에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MCCSC 와 Indiana 대학은 공립학교 학생의 참여를 요하는 학술 연구 계획을 심사 관리, 학부모에게 자녀의 참여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학술 연구에 대한 요청은 우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심사하는 IU 연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연구원이 IU 의 실험교육 센터 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하면 MCCSC 의 부교육감이 심사를 할 것입니다.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 질문의 내용이 일상적인것인지 또는 특별한 것인지가 가려지며 만일 학생 개인별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일상 학교 생활과 관계없는 부분에 관한 연구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연구에 관련된 학교의 교장과 교사 역시 학생의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부모는 언제나 지면으로 자녀의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과서 임대및 지도비, 2006-2007

인디애나주에서는 교과서 임대및 수업료를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주의 회계단이 정한 공식에 따라 책정되며 2006-2007 학년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33.03/학기 = \$60.05/년
초등학교(1-6 학년): \$72.94/학기 = \$145.88/년
중학교: 과목당 수업료가 책정됨
고등학교: 과목당 수업료가 책정됨

무상 교과서를 위한 자격

무료 급식을 위한 수입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수입의 가정은 무상으로 교과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문판 4 페이지 참고). 자세한 사항은 330-770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혜택을 위한 자격

무료 급식을 위한 수입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수입의 가정은 무상 교과서외에도 인디애나주의 Hoosier Healthwise 무상 의료 혜택 제도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녀의 학교 교장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MCCSC 는 금연금지 구역

(영문판 5 페이지)

1991 년 8 월 1 일부터 MCCSC 는 금연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학생과 학교 출입자에게 건강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모든 학교 건물, 학교 차량, 운동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MCCSC 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정책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MCCSC 의 취지에 부합한다.
2. 담배의 해독, 특히 발암물질로 밝혀진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3. 학교조직의 일반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전국 교육 위원회가 권장하는 바이다.
4. MCCSC 의 약물금지 조치와도 일맥상통한다.
5. 성인의 교외 흡연 권리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학교

MCCSC 는 다음 사항에 관해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실내에서의 생일 축하의 경우 음식이외의 건강에 유익한 것을 사용할 것.

탄산음료를 마시지않도록 장려할 것

건강에 유익한 점심 식사를 권장할 것.

만일 나누어 먹기위해 음식을 가져올 경우, 인디애나주 건강 관리부의 조항 410-IAC 7-24 의 규정에 따르는 상점구입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는 학급 파티, 간식 또는 축하를 위해 다른 학생과 나누어 먹기위한 음식도 포함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 직접만든 점심 도시락 이나 간식, 가정수업 시간에 관련된 음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옥외 휴식에 적합한 기온

기온 - MCCSC 는 찬바람을 동반하는 화씨 18-23 도 기온을 옥외 휴식에 적합하지 않은 지나치게 추운 날씨로 정하고 있습니다. 찬 바람을 결정하는 계산 도구에 관하여는 다음의 교육부 웹사이트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ws.noaa.gov/om/windchill/>.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비공립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학교 이사회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비공립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관하여 인디애나주의 최저 교육 기준을 지키기 위해 다음의 지침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명서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 A. 자격증 있는 교사가 가르친 과목이어야 할 것.
- B. 정규 과목인 경우, 주에서 정한 시간 동안 진행된 것이어야 하며, 그 외에는 인디애나주 최저 교육 기준에 명시된 바대로 학년당 시간수를 이수한 것이어야 할 것.
- C. 학과 내용이 MCCSC 내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유사해야 할 것.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비공립학교에서 전학오는 1 학년에서 12 학년까지의 학생은 학년 배치를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도 있는데 학교장은 이의 결과와 그 외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학년에 학생을 배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학점은 학생이 전학 온 후 일년간의 학업을 통해 이들 과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인정될 것입니다.

MCCS 학교 재단

MCCS 재단은 1976 년 이래 모든 MCCSC 학생들을 위한 교육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브래드 포드 우즈 캠프 (Bradford Woods Camperships)
시력 검사
장학금
Thank A Teacher
The Young Author's Conference
Circle the State with Song
Personal Achievement Banquet

저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FMCCS 는 501© (3) 기관입니다.
330-7700, exst. 3483

훈육 지침에 관한 안내

Indiana General Assembly (인디애나주 의회) 는 각 학교 협의회가 훈육 지침을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지면으로 알리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MCCSC 가 수년간 지켜왔으며 MCCSC 의 전반적인 훈육 지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 안내서와 학교 모임을 통해 이에 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본 Back To School Guide (영문판) 11, 14 페이지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물 사용과 관련된 법조항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공지사항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중고등학교에는 S.A.P. 와 CORE 라는 단체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그룹이 있는데 지난 해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신감, 이혼, 출석,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 회복, 전학온 학생/신입생, 삶에 필요한 기술, 사회성 발달, 고민 해소, 통찰력, 금연, 임신/나이 어린 엄마.

위의 모든 그룹이 각 학교마다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필요할 때면 제공되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줌으로써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데 있습니다. 만일 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곳으로의 의뢰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같은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전혀 참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 각 학교의 S.A.P.나 CORE 의 지도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S.A.P./CORE 에 관련된 모든 교직원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새 학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안내

특정 교재를 검토할 권리: 부모/후견인은 교과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개인에 관한 분석, 평가, 또는 조사에 쓰여질 교재를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교재에는 교사 지도서, 교과서, 영화/비디오, 테잎 등이 포함됩니다. 교재의 내용이 다음의 8 가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학부모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분석 평가 또는 조사를 위한 학생의 참여에 대한 동의: 학생의 부모/후견인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학생이 성인이거나 자립한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어느 누구도 교과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학생의 자세, 습관, 특징, 의견, 신념, 생각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분석, 평가 또는 조사에 학생의 참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1) 정당 활동, 2) 종교적 신념, 3) 학생 자신 또는 가족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정신/심리 상태, 4) 성적 성향/성에 관한 태도, 5) 불법 또는, 반사회적인,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잘못된 행동, 6) 가족의 비밀 공개 7) 법이 인정한 면책특권을 받았거나 남에게 공개되지 않은, 변호사, 의사, 목사등에게 한 진술, 8) 수입 (특정 프로그램 참여 혹은 금전적 보조를 받을 자격 여부 결정을 위해 법이 이를 요하는 경우 제외).

REF: Board policy 2241

Legal Ref: I.C. 20-10.1-4-15

후랭클린 산학 협력 체재 (The Franklin Initiative)

Greater Bloomington Chamber of Commerce

Franklin Initiative 란 MCCSC 와 경제단체, 비영리단체들간의 협력을 말합니다. 이 기관들은 모든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업이나 고등학교 이후의 추가 교육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석하였습니다. Franklin Institute 는 연례 포상행사로서 교육의 우수함을 인지하고 후원합니다. Franklin Initiative Partnership 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인턴쉽
-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업무 연수 (Job Shadowing)
- 중학교에 설치된 **Reality Stores**.
- 지역 경제인들과의 상호 협력 교육
- **대변인 사무실로부터** 학급 발표회
- 고등학생들을 위한 취업 워크숍
- 학력 기준을 유지해주는 제공-배움의 활동
- **금요일 밤에 열리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10 대의 밤 (Teen Nights)** 행사의 후원
- 지역사회일원들로 구성된 초등학생들을 위한 조력자
- IU 학생들과 IU 진학예정 고등학생들을 위한 조력자
-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업무현장 방문

Franklin Initiative 는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며, 이차적인 교육의 기회를 알려주는 정보와 경험들을 일찍 제공해주는 것에 역점을 둔다. 경제인과 교육자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실생활에서의 경험을 보다 많이 접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배운 것이 어떻게 성공적인 실생활로 연결되는 지를 직접 알 수 있게 해준다. 학생들의 성취도는 교육과정, 교직원들의 개발기회,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실습이 효과적으로 보강되었을 때 증진된다. Franklin Initiative 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Carol Maloney, Grater Bloomington Chamber of Commerce, 336-6381, 또는 이메일: cmaloney@chamber.bloomington.in.us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MCCSC 는 동등한 고용 기회를 부여합니다. (영문판 11 페이지)

MCCSC 는 동등한 고용 기회/차별 철폐 조치를 따르는 직장으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문벌, 나이, 성별, 결혼 유무, 장애 또는 재향군의 신분을 근거로 채용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의 이유로 교육적 활동이나 학생 활동으로부터 제외 또는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MCCSC 의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문벌, 나이, 성별, 결혼 유무, 장애 또는 재향군의 신분에 의하여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지도와 시설의 사용을 거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또는 설명,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주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Human Resources Director, MCCSC Administration Building, 315 North Drive

학생의 전자 정보망 이용에 관한 지침

(영문판 6 페이지)

학생은 자기 자신, 또는 그룹이나 반의 교육상 필요한 연락, 연구, 그 외 수업과 관계된 활동을 위해 전자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licy 2521 에 따르면 모든 교육 및 도서관의 미디어 자료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업적 필요와 학습 태도, 능력 및 발달 상황이 고려된 것일 뿐 아니라 교과 과정을 더욱 알차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의 전자정보망 이용에 관한 몇가지 원칙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Policy 2521 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전자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혜택이지 권리가 아니며 책임을 동반한다.
2. 이 서비스는 연락, 연구 및 다른 교육에 관련된 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책임감있게 이를 이용할 것에 동의하는 학생에게만 제공된다.
3. Policy 2521 에는 MCCSC 의 전자정보 자원 이용시 금지된 활동이 명시되어 있다.
4. MCCSC 는 제공하고 있는 전자정보망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학생의 전자정보망 이용에 관한 훈육 조치는 학생 행동 강령중 특히 괴롭힘 부분에 명시된, 부적절한 언행의 사용에 관한 기존의 지침을 따른다.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구좌는 학생과 부모/후견인 또한 구좌의 신청을 허락한 직원이 올바른 사용에 관한 동의서 (Acceptable Use Agreement) 에 서명한 후에만 학생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취업 허가서를 받으려면

인디애나주에서 일하는 청소년 (14 세-17 세) 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하루중 특정한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가능한 근무 일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을 수반하는 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하는 청소년인 경우,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받은 취업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두 개의 허가서를 동시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두 직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교직원 은 여러분의 학점이나 출석율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이의 발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서는 재학중인 학교의 상담실에 고용인의 고용 의사가 적혀있고 부모의 서명이 기재된 카드 (Intent to Employ) 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으며, 학교 사무실이 닫혀있을 경우 위의 카드와 함께 출생증명서를 MCCSC Administration Office (교육 위원회) 에 제출하여 취업 허가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행사의 비디오 촬영

School corporation 방침은 “대중을 위한 행사가 아닌 학생이나 학교의 활동을 비디오 촬영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교육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Policy 9160)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교육에 관련된 사례 회의나 교사-학부모 간담회, 그 외 이와 유사한 회의를 비디오 촬영하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다음의 주소로 연락 하여 주십시오
Human Resources Director, MCCSC Administrative Building, 315 E. North Drive

약물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이사회 의 지침

법에 따라 학교 이사회는 학교 운동장이나 건물, 학교 차량이나 학교와 관련된 모든 행사에서 학생의 약물 사용, 소지, 은폐, 또는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물이란 알코올, 근육 증강제, 인디아나법이 정한 위험한 규제 약물, 또는 그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을 말하며 이 지침에 따르는 것은 모든 학생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학생은 법적 절차를 밟아 이 지침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퇴학까지를 포함한 훈육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법이 요하는 경우 학교 협의회는 경찰에게도 알릴 것입니다.

학교 협의회는 음주 학생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학생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부모는 교장 또는 상담실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MCCSC 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영문판 7 페이지)

MCCSC Food Service 는 MCCSC 의 19 개의 모든 학교에 점심을 제공하며 거의 모든 학교에 아침식사를 제공합니다. 모든 메뉴는 각 연령별 그룹을 위하여 제정된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RDA) 가 권장하는 음식을 기준으로한 USDA (미국 농무부) 의 영양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메뉴는 학생들의 자유 선택

학생들이 먹기 않을지도 모르는 것을 제공하기 보다는 자신이 먹고자 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좋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학교음식 제공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1 개의 주요리와 2 개의 부식으로 된 점심 가격은 \$1.85 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택가능한 \$0.50 센트와 \$0.75 상당의 또다른 메뉴요리도 있습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집니다. \$2.10 에서 \$3.50 상당의 가격으로 한개의 주요리와 최소한 한개의 부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0.35 센트에서 \$3.00 사이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메뉴요리들이 있습니다.

자동화된 점심 급식

모든 학생에게는 고유번호가 지정되어 있어 점심 급식중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Bloomington North 와 Bloomington South 학생들은 점심 구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학교 ID 사용하여야 합니다. 점심 급식은 선불제이며, 지불 기간은 1년 또는 1학기, 1주 단위로 지불이 가능합니다. 구좌는 가족 단위이므로 모든 자녀의 급식비를 한장의 수표로(MCCSC Food Service 앞으로 발행) 지불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가족 구좌에 예치되며, 만일 잔액이 5불 또는 그 이하일 경우, 가족 구좌의 잔액은 가장 어린 자녀를 통해 매주 가정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만일 구좌가 마이너스일 경우,

구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금액이 구좌에 지불될 때까지 땅콩 버터 젤리 샌드위치와 우유를 무료로 지급 받을 것입니다. 자녀의 구좌 잔액의 확인은 학교 식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만일 필요할 경우 자녀의 구좌에 간식 불필요, 음식 알레르기 또는 자녀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2006-2007 학년도 점심 급식비

초등학교: \$1.85
 중고등학교: \$2.10 - \$3.50
 할인 급식: \$0.40
 우유: \$0.35
 아침: \$1.10
 할인된 아침: \$0.30
 간식: \$0.25-\$3.00

무료/할인 점심 급식을 위한 자격

연방 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MCCSC는 가족의 수입을 기준으로 무료 혹은 할인 가격에 점심을 제공합니다. 학년초 등록기간중에 무료, 할인 점심 급식을 받을 자격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수입에 관한 정보와 신청서가 배부되며 수입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학기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심 급식 지원 소득 자격에 관한 기준

(2006년 7월 1일 부터 2007년 6월 30일 까지 유효)

가족수	할인 급식 - 연방 영세 기준의 185%			무료 급식 - 연방 영세 기준의 130%		
	연간	월간	주간	연간	월간	주간
1	\$18,130	\$1,511	\$349	\$12,740	\$1,062	\$245
2	\$24,420	\$2,035	\$470	\$17,160	\$1,430	\$330
3	\$30,710	\$2,560	\$591	\$21,580	\$1,799	\$415
4	\$37,000	\$3,084	\$712	\$26,000	\$2,167	\$500
5	\$43,290	\$3,608	\$833	\$30,420	\$2,535	\$585
6	\$49,580	\$4,132	\$954	\$34,840	\$2,904	\$670
7	\$55,870	\$4,656	\$1,075	\$39,260	\$3,272	\$755
8	\$62,160	\$5,180	\$1,196	\$43,680	\$3,640	\$840
1인 추가당	+ 6,290	+ 525	+ 121	+ 4,420	+ 369	+ 85

점심 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MCCSC 점심 프로그램은 별도로 지역이나 주세금이 아닌 자가충당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판매 수입금으로 음식비, 고용인에 관한 제반 비용, 필요 용품, 설비 보수와 기타 제반 비용으로 쓰여집니다.

생활기록부

(영문판 7 페이지)

생활기록부는 표준화 시험의 성적, 각 학년별 성적, 수상기록 및 그 외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록의 입수는 1974 년의 가족의 교육적 권리와 사생활법 (FERPA)에 의해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1. 학부모는 자녀가 18 세가 될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후 상급학교에 등록할 때까지 이 기록을 입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학생이 내국세 수입법전의 152 조항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자신만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는 생활기록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학교 방침에 준하여 적절한 횟수와 상황내에서 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학부모는 기록의 오류 또는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학부모는 자녀에 관한 기록에 대해 동의 하지 않는 이유를 생활기록부에 첨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학부모의 동의없이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교사와 학교직원, 전학 가는 학교의 직원, 특정 주정부/연방정부 직원만이 가능하며 MCCSC 는 학생이 전학하게될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적표를 보낼 것입니다.
6. 각 학생의 기록부에는 교직원이 본 경우를 제외하고 누가, 왜, 언제 기록을 보았는지에 대한 사항이 기록될 것입니다.
7. 만일 학부모가 특정한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줄 것을 원할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느 누구나 학생의 기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모가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면 그 사본을 부모가 받아 볼 수 있으며, 부모는 자녀가 전학 할 학교에 보내진 사본 또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8. 생활기록부의 사본은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제출되는데 학부모는 이에 관해 사전 통고를 받을 것입니다.
9. 학생의 신상명세서, 즉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진, 전공, 과외활동, 키, 몸무게, 운동부 활동, 출석일수, 졸업일, 수상기록 그외 알려져도 학생에게 해가 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학부모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보는 어떤 단체에도 영리수단으로 제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상에 관한 정보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와 성인인 학생은 MCCSC 로 부터 이에 관한 공문을 받은 지 20 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건강기록과 생활 기록부의 조사 및 공개, 또는 신상명세서의 공개를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따로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소년법원기관(Juvenile Justice Agency) 학생신상에 관한 정보공개

생활기록부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 소년법원 혹은 지역 소년법원 대행사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에 관한 판결이 이루어지기전까지 대행사에서 일하는 과정에 필수할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보를 받는 대행사는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제삼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비행소년을 감시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I.C. 20-33-7-3)

약의 복용이 필요할 때

정기적으로 또는 회복기 동안 약이 필요한 학생은 약을 학교에 두고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는데 학교의 의료관계 직원이나 그 외 정해진 사람이 투약을 감독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모든 약은 처방약 비처방약을 막론하고 학교 사무실로 보내져야 하며 다음 사항이 분명히 적혀있어야 합니다.
 - a. 학생의 이름
 - b. 약 복용시간
 - c. 약 이름과 복용량
 - d. 처방약 일 경우, 처방 의사의 이름이 약국의 라벨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함
2. 상표가 붙은 본래의 약병이나 포장의 약만 접수합니다.
3. 투약 전 부모나 후견인은 위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위임서는 어느때고 회수할 수 있는데 일년 이상은 학교의 기록에 보관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모든 처방약은 투약전 반드시 처방 의사의 서면 지시가 필요하며 그 사본은 학생의 건강 기록부에 보관 됩니다.
5. 학교의 최고 책임자가 지정한 직원(간호사)만이 투약을 하며 학교 간호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다른 성인의 입회를 필요로 합니다.
6. 약은 최대 일주일분을 학교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학교 간호사나 지정된 직원이 약을 체크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며 투약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감독을 할 것입니다.
7. 학교에 가져온 약은 안전을 위해 학생으로 부터 압수될 것입니다.
8. 주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투약은 간호사가 담당할 것입니다.
9. 모든 투약 기록은 학교 직원에 의해 관리될 것입니다.
10. 응급시에 학교 직원은 응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록 공개

MCCSC 의 각 학교 양호실은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 학년 초 각 학교의 교직원은 이 명단을 받게되는데 이는 교사들에게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비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가족의 교육적 권리 및 사생활법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자녀의 학교 양호실에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약의 소지와 자가 투약

약이 소지와 투약에 관한 제한에서 예외인 경우는 만성질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소지하고 복용하기 위해 부모와 교장의 서면허가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약의 서면 허가서는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서는 반드시 의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학생이 급성, 만성병을 가지고 있어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는 사실
2. 병이나 건강 상태가 처방약의 응급투약을 요구한다는 사실
3. 학생이 처방약의 복용법을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
4. 학생이 처방약을 소지, 복용할 수 있음을 허가받았다는 사실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에게 약물치로는 부모와 부모의 위임을 받은 18 세이상의 성인에게만 공개됩니다. 9 학년에서 12 학년까지의 학생에게는 부모의 허가서를 지닌 당사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I.C. 20-8.1-5.1-7.5)

예방 접종은 모든 학생에게 필수

예방접종은 자녀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MCCSC 의 보건과는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여러분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인디아나주는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시키기 전 다음의

예방접종일이 기록된 서류를 제출 하도록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풍진, 이하선염, 소아마비, B형 간염.

의사의 서명이 있는 의학적 이의서나 부모의 서명이 있는 종교적 이의서를 제출하면 이 예방주사에 관한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이의서의 유효 기간은 1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주사에 관한 기록 또는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정학 또는 퇴학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MCCSC 보건과 330-7833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I.C. 20-8.1-7-2](#), [20-8.1-7-9.5](#), [10.1](#)

학년별 최소한의 예방 접종 기준표

예방 학년 접종명	예비 유치원 (Pre- Kindergarten)	유치원 또는 1 학년중 만 7 세이하	2 학년 또는 만 7 세 이상	3 학년	4-5 학년	6-12 학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P, DT)	4 회	5 회 (4 회째 접종을 만 4 세 또는 그 이후에 받았을 경우 4 회 가능)	3 회	3 회	3 회	3 회
소아마비 (주사 또는 경구용 백신, OPV / IPV)	3 회	4 회 (3 회째 접종을 만 4 세 또는 그 이후에 받았을 경우 3 회 가능)	4 회 (3 회째 접종을 만 4 세 또는 그 이후에 받았을 경우 3 회 가능)	4 회 (3 회째 접종을 만 4 세 또는 그 이후에 받았을 경우 3 회 가능)	4 회 (3 회째 접종을 만 4 세 또는 그 이후에 받았을 경우 3 회 가능)	4 회 (3 회째 접종을 만 4 세 또는 그 이후에 받았을 경우 3 회 가능)
홍역 (Measles / Rubeola)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2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2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2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2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풍진 (Rubella / German Measles)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이하선염 (Mumps)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1 회 (만 1 세 또는 그 이후)
B 형 간염 (Hepatitis B)	-	3 회 (모든 유치원생과 1 학년생)	3 회 (전년도 인디애나주 학교의 1 학년이었으 며 현재 2 학년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	-	-	-

장애아의 판단, 평가 및 배치에 관한 부모와 학생의 권리

(영문판 11 페이지)

2006-2007 년도 학교 방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번역판은 곧 나올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침은 영문판을 참고 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나열되는 권리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장애에 대한 평가 및 특수교육에 관한 규정을 학부모가 확실히 알게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의 사항은 담당자인 Mr. Michael Horvath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평가 및 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장이나 그의 대리인, 학교 이사회, 혹은 인권 사무소의 직원과 의논할 권리가 있습니다.

A. 학부모/후견인이 평가 및 배치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예

1. 미연방 정부 단체

Chicago/Cleveland*

312-886-3456 Illinois, Ohio, Minnesota, Michigan

216-522-4970 Indiana, Wisconsin

* Cleveland 사무소는 시카고 지역의 위성 사무소이며 불만 접수 사항을 처리할 것입니다. 시카고 사무소는 시카고 지역과 일리노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주 단체

Indiana Protection and Advocacy Services

850 N. Meridian St. #2C

Indianapolis, IN 46204

317-232-1150

IN*Source

833 Northside Blulevard

South Bend, IN 46617-2993

219-234-7101

3. 지역 단체

The Center for Behavioral Health

645 South Rogers Street

Bloomington, IN 47401

812-339-1691

4. 지립하게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Legal Services Organization of Indiana, Inc.

812-339-7668 FAX 812-339-2081

B. 다음은 연방법에 의해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선택의 내용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모든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돕고,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떠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알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학부모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공립교육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게할 권리.
2. 학교로 부터 연방법에 따른 권리와 선택에 대해 조언을 받을수 있는 권리.
3. 자녀에 관한 문제의 확인, 평가 및 배치에 대해 통보를 받을 권리.
4. 자녀에게 적절한 공립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할 권리. 여기에는 최대한으로 가능한 한 정상아들과 같이 교육을 받게할 권리와, 장애아가 정상아와 동등하게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상식적인 선에서 편의를 베풀어 줄것을 요구할 권리 포함.
5. 장애아들도 정상아들에게 제공되는 시설과 유사한 곳에서 교육받고 서비스를 받게할 권리.

6. 자녀가 장애아 교육법에 따라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특수교육및 서비스 또는 재할법에 근거해서 교육에 관한 중재/조정을 받게할 권리.
7. 평가및 배치에 대한 결정이 학생, 평가자료, 각종 선택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내려질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8. 자녀가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경우, 추가비용 없이 학생운송 서비스를 받을 권리.
9. 장애아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외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10. 장애아의 확인, 평가, 교육및 배치에 관한 모든 기록을 검토할 권리.
11. 비용이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적절한 비용에 받을 수 있는 권리.
12. 자녀의 기록에 관한 타당한 설명요청에 학교측으로 부터 응답을 들을 권리.
13. 자녀의 기록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 만일 학교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빠른 시간내에 부모에게 이를 통보할 것이며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또한 명시할 것입니다. 이 청문회는 가족의 교육적 권리와 사생활법 (FERPA) 에 의거한 것으로서 법적 청문회와 혼동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녀에 대한 장애 확인, 평가, 교육 프로그램, 또는 배치 결정에 관해 중재, 법적 청문회, 또는 재심을 요구할 권리. 이에 대한 비용은 학교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15. 청문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열리게 됩니다.
 - a. 부모/후견인은 청문회를 요청하게된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 요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블루밍턴시의 인권 사무소에 보낸다.
 - b. 학교측에서 학생의 장애확인, 평가, 배치, 또는 무료 공립교육에 관해 청문회를 열고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부모에게 청문회를 여는 이유를 밝힌다.
 - c. 청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서를 접수한지 수업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무리가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다. 교육감 혹은 그 대리인은 그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공정한 담당자를 선임한다. 학교측은 청문회의 기록, 청문회 담당자에 대한 사례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이나, 부모/후견인에 의해 발생된 비용에 관해서는 아래에 나와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부모는 해당되는 자녀를 청문회에 데리고 나올 권리가 있으며, 청문회를 대중에게 공개할 권리와 변호사 혹은 다른 사람이 청문회에 대신 나서게 할 권리가 있다.
 - d. 청문회가 계속되는 동안 학교측과 부모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는 한 해당되는 학생은 기존의 배치된 곳에 다니며, 청문회에 관련된 절차가 학년 말 이후까지 진행될 경우 그곳에서 진급한다, 만일 배치에 관한 논란이 있을 경우, 청문회 담당자는 학생을 임시로 다른 곳에 배치한다. 만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학교에의 첫 입학지원에 관한 것이라면 학생은 부모의 동의하에 이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학교에 다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문회 담당자가 배치를 결정한다.
 - e. 학생과 부모는 변호사나 대리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또한 부모의 요청이 있거나 학교측에서 시작한 청문회일 경우,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관한 정보를 학교로 부터 받을 수 있다. 청문회 담당관은 청문회중에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학교측은 배치나 전학의 타당함 또는 이를 거부한 이유의 타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 f. 청문회의 내용은 모두 활자화되는데 부모나 대리인은 활자화 된 내용을 원할 경우 이를 입수 할 수 있으며, 비용은 학교측이 부담한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부모나 대리인은 학교가 열려있는 시간중에 자녀와 관련된 모든 학교기록을 볼 수 있으며 어느 부서, 어느 직원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부모나 대리인은 문제가되고 있는 결정에 영향을 끼쳤음직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질신문 또는 반대신문할 권리가 있다. 부모, 부모의 대리인, 학교측은 각종 증거나 각계 전문가의 증언을 제시할 권리가 있는데 청문회 5 일전까지 양측에 알려지지 않은

- 증거의 제출은 청문회 담당관이 달리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다. 청문회후 담당관은 수업일을 기준으로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되어 있는데 이는 우편으로 부모와 교육감에게 전달되며 여기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도 명시된다. 결정된 사항은 어느 한쪽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한 20 일 이내에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만일 변호사를 고용한 부모/후견인이 이긴 경우, 변호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16. 부모가 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밟아 재심을 요청할 권리.
 - a. 결정에 대한 재심은 청문회에 관련된 어느 측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통보를 받은지 20 일 이내 (수업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불복하는 이유를 자세히 적어 교육 감독관과 상대측에 보낸다. 학교 협의회는 이 기록 전체를 공정하게 재심할 항소 담당관을 임명하는데 재심에는 구두논쟁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심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지 20 일 이내 (수업일 기준)에 이루어진다.
 - b. 재심기록은 활자화되어 요구하는 측에 제공된다.
 - c. 항소 담당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측은 인권 사무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d. 만일 청문회, 재심, 또는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 부모가 승소한 경우,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17. 부모가 승소한 경우 상식적인 선의 변호사비를 청구할 권리.
 18. 차별에 대한 불만처리를 요구할 권리. 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재활법 504 조항에 따른 불만처리 요청은 불만을 초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적어 서면으로 제출한다.
 - b. 이를 교육감인 Dr. Maloy 에게 다음의 주소로 보낸다.
 Dr. John A. Maloy, Superintendent
 Monroe County Community School Corporation
 315 North Drive
 Bloomington, IN 47401
 - c. 가족의 교육적 권리와 사생활법 (FERPA)에 따라 청문회가 열린다.
 - d. 재활법 504 조항 담당자는 청문회 담당관을 임명하여 불만처리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후 적절한 시간내에 청문회를 열도록 한다.
 - e. 504 조항 담당자는 부모, 학생, 직원에게 청문회의 시간, 장소, 날짜를 충분한 시간전에 알려준다.
 - f. 청문회의 결과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학군내의 공무원 포함) 이를 진행할 수 있다.
 - g. 학교측은 부모, 학생, 직원이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기에 충분하고 공정한 기회를 준다. 부모, 학생, 또는 직원은 자기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비롯한 제 3 자의 도움을 받거나 그들로 하여금 대변하게할 수 있다.
 - h. 학교측은 청문회로 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내린다.
 - i. 이 결정은 청문회중에 제시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내려지며 증거물의 일람표와 결정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밝힌다.

제한된 환경의 최소화

모든 공사립 교육기관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학생은 최대한 정상아와 같이 교육받고 각종 교육및 과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매년 각 장애 학생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을 배치하는데, 이들은 배치될 학교나 시설이 학생에게 해가될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학생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인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개인별로 작성된 교육 프로그램이 별다른 조정을 필요로하지 않는 한 장애아는 그가 정상아일 경우 다니게 될 학교에서 같은 나이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단 심사위원이 위와같은 환경에서는 장애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수반이나 별개시설에 배치될 것입니다. 장애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배치에 관한 여러 대안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훈계방침은 각 학교에 의해 정해집니다

(영문판 14 페이지)

각 학교장은 교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훈계방침을 정하는데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성장에 걸맞는 품행이 늘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사 개개인은 좋은 규율이 있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할 것이며,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일관되고, 공정하며, 정도에 지나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규율위반 학생은 퇴학당할 수도 있습니다.

훈육조치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비행을 다루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a. 유머 감각
- b. 단순한 학급 관리
- c. 비행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
- d. 개인 면담
- e. 특혜 박탈
- f. 상황으로부터의 고립 또는 격리 (학생을 교장실에 보내는 것은 교사가 학교장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한 교장실에 보내는 이유가 학생과 부모에게 문제를 삼을 만큼 심각한 경우라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 g. 부모 면담
- h. 변상
- i. 법적 절차에 따른 교내 정학 또는 교외 정학
- j. 법적 절차에 따른 퇴학

괴롭힘

동료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생을 괴롭히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이사회와 상반되며 연방 또는 인디애나법에 위반됩니다. 괴롭힘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 추파, 부적절한 신체접촉, 또는 음란한 말을 포함한 성희롱외에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말이나 행동이 포함됩니다.

교육감은 학생 행동 강령에 어떤 형태의 성희롱이나 인종, 민족적 배경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괴롭힘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학생, 직원, 학교 방문자로 부터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즉시 조사에 나설 것이며 이 지침서와 행동 강령중 하나 혹은 모두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학이나 퇴학을 포함한 훈육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신고

괴롭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다음은 그 예이며, 모든 경우 다른 학생, 직원, 또는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 A. 언어적 성희롱
지면상 혹은 말로 하는 성적 풍자, 외설적인 코멘트, 음담패설, 성적 유혹 또는 협박.
- B. 비언어적 성희롱

외설적인 물건, 사진, 또는 낙서,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몸짓, 소리, 추파, 휘파람등을 보냄.

C. 신체접촉

쓰다듬기, 꼬집기, 밀기, 강간등을 포함한 원하지 않는 만짐, 신체접촉, 또는 이를 강행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시도함.

성별/ 민족적 배경/ 종교/ 장애/ 동성연애/ 신장/ 몸무게에 관한 괴롭힘

A. 언어적 괴롭힘

a. 지면상 혹은 말로하는 남녀 성별/ 출신국/ 동성연애/ 종교적 신념등에 관한 풍자, 코멘트, 농담, 모욕, 협박, 또는 무시하는 말.

b. 따돌리기

B. 비언어적 괴롭힘

물건, 사진, 또는 낙서를 학교에 남기거나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몸짓을 함.

C. 신체적 괴롭힘

때림, 야유, 침뱉기등 위협적이거나 알보는 행동.

자기 자신이 위와 같은 사례를 당했거나 동료학생, 교사, 직원이 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학생은 즉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A.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학생, 직원이거나 교장이 아닌 학교 관련자인 경우,

피해자는 즉시 교장이나 학교 교육 위원회의 Title IX 집행자에게 연락한다 (Human Resources Director, 315 North Drive, Bloomington, IN 47401, 812-330-7700).

B.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교장인 경우, 즉시 Human Resources Director 에게 연락한다.

학생은 서면, 전화,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가해자의 이름과 괴롭힘의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신고는 즉시 서면으로 요약되어 Title IX 집행자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학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Title IX 불만처리 요청서를 직접 Title IX 집행자에게 접수 시킬 수 있는데 이 때는 위 (A)의 주소로 즉시 보내야 합니다. 교장이나 Title IX 집행자에게 접수된 신고는 적절한 시간내에 비밀로 조사될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이 요하거나 법적 혹은 행정적 진행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자는 조사중 외에는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신고자의 비밀 보호

B.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신고 장려

C. 가해자라고 잘못 신고되었을 수도 있는 측의 명예 보호

불만에 대한 조사는 대개 관련된 모든 사람과 (부모가 포함될 수도 있음) 이름이 밝혀진 증인이나 명백한 증인과의 회의를 수반합니다. 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불만을 접수시키거나 조사에 협조한데 따른 강요나 협박, 보복, 차별로 부터 보호될 것입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불만의 타당성이 밝혀지면 괴롭힘이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적절한 교정이나 훈육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성희롱이 아동학대 요건에 해당될 경우 AG 8462 에 따라 즉시 보고될 것입니다. 학교 협의회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반대로 차별이나 협박의 의도가 없는 반사적 행동인지를 결정할 때는 관련된 모든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잘못 오해받는 것은

무고한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학생, 직원, 혹은 학교 관계자를 가해자라고 신고할 때에는 정직하고 책임감있게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체벌

학교 이사회는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형태의 훈육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필요이상의 힘을 쓴다든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학생지도의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사는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에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른 모든 수단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정학이나 퇴학의 절차를 밟아 교실이나 학교로 부터 학생을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해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기나 흉기를 빼앗기 위해, 정당 방위를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이나 기물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힘을 사용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원이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거나 비상식적이거나 부적절한 힘을 학생에게 가한 경우에는 학교 이사회의 징계 대상이 되기도 하며 폭행죄로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체벌은 학생 징계의 수단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훈육중에 학생과 어떤 신체 접촉도 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손이나 물체로 학생을 치거나 때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직원에 대한 협박

학교 이사회는 교직원이 협박당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을 위협하거나 그들의 신변에 걱정을 초래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 다른 직원, 학교 이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징계조치를 받을 것이며 적절한 기관에 보고될 것입니다.

정학과 퇴학에 관한 지침

(영문판 9-10 페이지)

학교 이사회의 의도는 MCCSC 와 지역사회 의 적절한 자원을 활용하여 정규교육을 마칠 때까지 학생이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 이사회는 정학이나 퇴학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을 격리시키는 것은 이 학교 협의회내에서 학생에게 가하는 가장 심한 처벌이라는 것과 격리는 정상아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 정학과 퇴학은 인디انا법 (Indiana Code) 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총기를 학교에 가져오는 학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어도 1 년간의 퇴학을 당할 것입니다. 청문회 심사관이나 교육감 또는 학교 이사회는 각 상황에 따라 퇴학 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본 지침서 사본, 퇴학을 초래한 상황, 학교 이름, 퇴학 당한 학생의 수, 총기의 종류를 적어 인디انا주의 교육부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안내 지침에 따라 장애자가 아닌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처분 할 수 있고 자동차 관리국 지침에 따라 자동차 관리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학과 퇴학

일부 학생의 행동이 수업이나 다른 교육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방해가 되는 경우 학교 지도부는 학생의 격리에 대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학교 이사회는 인디انا 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수업이나 교육활동으로 부터 격리 - 교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을 자신의 수업이나 교육활동으로 부터 하루, 또는 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일까지 불참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은 다른 장소에서 일상의 공부나 추가된 공부를 하게됩니다. 만일 수업시간을 넘길 때까지 격리가 계속되거나 격리후에도 학생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학부모와 교사, 교장이 면담할 수 있습니다.
2. 정학 - 교장: 교장이나 그 대리인은 학생을 5일까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일까지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3. 퇴학: 본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남은 학기와 그 다음학기를 합친 기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는데 아래의 정학이나 퇴학의 기준 13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학이나 퇴학의 기준

비행이나 심각한 반항은 정학이나 퇴학의 이유가 되는데 다음은 그 예입니다.

1. 폭력이나 무력 사용, 소란 법석을 피움, 강요나 협박, 공포감 조성, 소극적 저항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학생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선동함.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의 예입니다.

- a. 학교건물이나 운동장 또는 그 일부를 점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을 못하게 방해함
- b. 학교건물의 출입구나 복도나 문을 막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음.
- c. 학교건물이나 기물에 불을 지르거나 손상시킴.
- d. 무력으로 학교 소유의 장소에서 열리는 교육적 행사나 모임등을 저지하거나 저지하려함.
- e. 교사나 직원의 교육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말썽을 부림.
2. 학교의 자산을 파손하거나 파손을 시도하고, 훔치거나 훔치려 함.
3. 개인의 자산을 파손하거나 파손을 시도하고, 훔치거나 훔치려 함.
4.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입히려하거나 부상을 입힐만한 행동을 고의로 함. 그러나 정당방위를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조처였다고 믿어지는 경우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5. 학생으로부터 돈이나 귀중품을 빼앗기위해 협박하거나 겁을 줌.
6. 일반적으로 흥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칼이나 그 외의 물건을 고의로 휴대, 취급하거나 남에게 전해줌.
7. 고의로 마약, 환각제, 각성제, 진정제, 마리화나, 술, 카페인 등 물질, Phenylpropanolamine (PPA) 를 포함한 물질, 흥분제, 또는 그 외 사람을 취하게 하는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남에게 전해주거나 또는 이미 습관성이 되어 있을 경우.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의 사용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a. 규칙 7의 예외: 만성병이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소지하고 복용하기 위해 부모와 교장의 서면 허가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 약의 서면 허가서는 매년 갱신되어야 함. 또한 허가서는 의사에 의한것이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①. 학생이 급성, 만성병을 가지고 있어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는 사실.
 - ②. 처방약의 응급 투약을 요구하는 병 또는 건강 상태의 특징
 - ③. 학생이 처방약의 복용법을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
 - ④. 학생이 처방약을 소지, 복용할 수 있음을 허가받았다는 사실.
8. 규제약물을 불법적으로 판매. 또는 다른 학생에게 위험하거나 학교의 목적이나 교육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형사범을 위반함.
9. 교사나 학교 직원의 감독하에 있는 학생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서 학교의 목적이나 교육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10. 인디아나법으로 금지된, 학교의 목적이나 교육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활동에 참여함.
11. 학교의 목적이나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며 인디아나법에 따라 채택된 규칙을 계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a. 학교에서 성적인 행위를 함.
 - b. 행정 당국자에게 불복함.
 - c. 고의로 결석하거나 태만함.
 - d. 7 번에 언급된 약물이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남에게 전함.
12. 학교의 목적이나 교육적 활동과 무관한 일로 학교 시간중 페이지나 무선 전화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함.
13. 총기 또는 파괴적인 도구의 휴대
 - a. 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종류의 총기 또는 파괴적인 도구를 휴대하거나 만지거나 남에게 전할 수 없다.
 - b. 총기 휴대에 대한 처벌: 5 일간의 정학과 1 년간의 퇴학. 상황에 따라 교육감은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c. 교육감은 이 규칙의 위반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있을 경우, 즉시 Monroe County 경찰로 통지를 보내야 한다.
14. 살상적인 무기의 휴대
 - a. 학교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살상적인 무기를 휴대하거나 만지거나 남에게 전할 수 없다.
 - b. 인디아나 법에 의하여 살상적인 무기라함은 다음에 열거한 것을 말함.
 - 무기, 레이저 또는 전기 감전 무기나 기구, 화학 물질. 이외 어떤 물건, 물질이든 인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
 - 과거에 범죄 수행에 이용되었던지 그런 목적으로 훈련을 받아 쉽게 인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동물.
 - c. 살상적인 무기를 소지한 학생은 최대한 10 일간의 정학이나 1 년간의 퇴학을 당할 수 있음.
 - d. 교육감은 이 규칙의 위반으로 학생을 퇴학 처분할 경우 즉시 경찰에 통보해야 함.

위에서 언급된 정학 또는 퇴학의 기준은 학생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 a. 학교 시작 직전부터 학교 종료 직후, 또는 학생 그룹이 학교를 이용하는 동안 운동장에 있을 때.
- b. 학교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교외에 있을 때.
- c. 학교나 학교 활동 또는 행사로부터 장소를 이동할 때.

위의 기준외에도 학생이 교내외에서 학교의 목적이나 교육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불법적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 또는 교내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말, 공휴일, 학교의 휴식기, 그리고 수업이나 다른 학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여름방학중에 발생한 모든 불법적 행동을 포함합니다.

정학 절차

교장이나 대리인이 정학을 결정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1. 정학처분을 내리기전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 a. 학생은 정학을 받게 된다는 서면 또는 구두 설명서를 받으며
 - b. 만일 학생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물이 제시되고
 - c.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2. 학생의 즉각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 정학처분을 내린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위와 같은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3. 정학을 받은 후 부모/후견인은 정학 기간, 정학을 유발한 학생의 비행, 교장의 조치가 포함된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4. 정학중인 학생은 이 학교 구역 (Monroe County)의 어느 다른 학교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5.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이름은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퇴학 절차

교장이나 대리인이 교육감에게 학생의 퇴학을 건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1.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퇴학에 관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중 한명을 임명 할 수도 있다.
 - a. 법조인
 - b. 퇴학을 내리지 않았고 또 이를 초래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교육 위원회 직원
2. 퇴학은 부모와 학생이 퇴학에 관한 회의에 나와 줄것을 요청받을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학생 또는 부모의 불참은 행정적으로 퇴학을 받아들이며 학교 이사회에 항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이 회의에 참석하여 줄 것에 대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배달 증명 우편 (certified mail) 이나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데 퇴학에 대한 이유와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와 목적이 포함된다.
4. 이 회의에서 교장이나 대리인은 퇴학에 대한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한다. 학생과 부모는 혐의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학생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5. 퇴학에 관한 회의가 열린 경우 그 진행자는 회의중 제출된 증거를 서면으로 요약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학생과 부모에게 이를 통지한다.

퇴학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 사람이 내린 결정에 대한 항소는 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이 사건을 맡아 퇴학에 관한 회의의 요약을 검토하고 학교와 학생/부모 양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Back To School Guide (영문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의 정학, 퇴학 및 격리

장애아에 대한 훈육조치시 학교 이사회는 이에 관한 연방 및 인디애나법을 따를 것입니다. 장애아가 배치된 곳에서 일시적으로 격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교장은 누적된 정학일수가 10 일을 넘지 않는 한에서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모든 법적 절차가 잘 따라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정학

누적된 정학일수가 10 일이 넘게되는 경우 이 건을 담당하기 위한 위원회가 소집되는데 이들은 평가 계획서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 10 일 이내에 다시 모여 행동 계획서를 세울 것입니다. 만일 행동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 학생이 또 정학을 받게되는 경우 이로 부터 10 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행동 계획서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할 것입니다.

퇴학

장애자가 퇴학 처분을 받을만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교장은 퇴학을 요청한다. 학교는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절차상 보호받게 되어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알린다. 수업일수로 10일 이내에 학교측은 행동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 학생의 기능적 행동 평가 계획서를 세우기 위한, 또는 기존의 행동 계획서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시한다. 또 이 건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학생의 장애와 훈육조치를 유발케한 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점검하기 위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위에서 언급된 회의중에 행해질 수도 있다. 위원회는 훈육조치를 유발케한 행동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평가와 진단 결과, 학생에 대한 관찰, 학생의 현 IEP (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개인별 교육 계획서) 와 배치를 고려해야하며, 행동과 관련지어 볼 때 학생의 IEP 와 배치가 적절했는지, IEP 에 적절한 서비스가 배치된 곳에서 제공되었는지, 장애로 인해 학생이 행동의 영향과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인지, 장애로 인해 학생이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일 위원회가 위의 4 가지 사항중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고 결론지으면 문제가되고 있는 행동은 장애의 결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과 장애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으면, MCCSC 의 퇴학에 관한 절차를 정확히 따랐을 경우 학교는 부모에게 이 결정 사항과 절차상 보호받게되어 있는 조항을 알릴 것입니다 (부모가 회의에 불참했을 경우).

격리

Section 504 나 Article 7 에 의거하여 장애 학생을 격리해야 하는 경우 인디애나법 (Indiana Code 20-8) 에 나와있는 대로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회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로 학생을 격리해야 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퇴학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Back To School Guide (영문판)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ONROE COUNTY COMMUNITY
SCHOOL CORPORATION
CENTRAL ADMINISTRATION STAFF

(교육 위원회 직원 안내)

Administration Center
315 North Drive
Bloomington, IN 47401
812/330-7700 or FAX 812/330-7813
<http://www.mccsc.edu>

Mr. James Harvey	Superintendent of Schools (교육감)
Assistants:	
Mr. Timothy Thrasher	Comptroller (회계 감사관)
Mr. Lynn Black	Director of strategic Planing & Development
Mr. Mike Shipman	Director of School Operation (학교 운영 감독)
Mr. Bruce Law	Director of Reserch and School Improvement (연구와 학교 개선 감독)
Ms. Pam Sklar	Director of Human Resources (인사부장)
Mr. Mike Scherer	Director of Extended Services (학교 시설 운영 서비스)
Mr. Mike Horvath	Director of Special Education (특수 교육)
Ms. Cathy Diersing	Director of Reading Services (독서 서비스)

BUCKNER, Barbara – Assistant Comptroller (부회계 감사관)
CARTER, John – Director of Planning (시설 계획부장)
CLARK, Mike – Director of Transportation (운송부장)
HOBBS, Linda – Food Services Associate (학교 식당 운영)
JEON, Choonhyun – Coordinator of ESL Office (영어 교육부)
PERRY, Wendy – Director of School Age Care Program
PLAFORD, Gary – Coordinator of School Social Services (학교 사회 사업 담당자)
PORTLE, Karen – Director of Information Services (정보 서비스 부장)
SMITH, Beverly – Human Resources Associate (인사부 차장)
TUPPER, Janet – Administrative Asistant to Superintendent & School Board (교육감과 이사회의 행정 보조자)
ZAGER, Carl – Coordinator of Instructional Technology (교육적 기술 담당)

안 내 - 330-7700

중앙 행정 직원은 학교 시스템에 관한 거의 모든 질문 사항에 응답할 수 있을것입니다. 교환을 통해 (오전 8 시 - 오후 4 시 30 분) 여러분을 가장 적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 하실 수 있습니다.

Office for Curriculum/Assessment/Instruction (교과 과정/평가/지도)

Director Strategic Planning & Development
Director of School Operations
Director of Research & School Improvement
Accelerated Learning Program (ALPs)
Elementary Instruction (초등학교 교육)
Middle School Instruction (중학교 교육)
High School Instruction (고등학교 교육)
Reading Services (독서 서비스) - 349-4761

Special Education Services (특수 교육) - 349-4756
Social Services (사회 복지 서비스) - 349-4763
Bradford Woods/LOTS (야외 교육)
Instructional Technology (교육 기술)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Office (영어 교육부)
Psychological Services (심리적 서비스)
School Age Care (탁아 프로그램) - 330-7702
State/Federal Grants (주/연방 보조금)
Student Due Process (법적 절차)
Textbook Adoption (교과서 채택)

Extended Services (확대 서비스)

Buildings/Grounds (빌딩/운동장) - 330-7720
Facilities Planning (시설 계획) 330-7720
Food Services (음식 서비스) - 349-4762
Maintenance/Security (보수/경비) - 330-7720
Transportation (운송) - 330-7719

Foundation of MCCS (학교 협의회 재단) - 330-7700, ext. 3483

Tina Peterson, Executive Director

Office of the Comptroller (회계 감사부) - 349-4790

Accounting & Budget (회계, 예산)
Facilities Planning (시설 계획) - Finance (시설 계획 재정)
Insurance (보험)
Payroll (급여)
Textbook Rental Fees (교과서 임대비)
Central Warehouse Bookstore (중앙 서점) - 330-7721
Information Services (정보 서비스) - 349-4758
Administrative Computing (행정 전산)
School District Boundaries (학군)
Purchasing (구매)
Accounts Payable (지불 계정)

Human Resources (인사부) - 349-4753

Job Line (구직 안내) - 330-7700, ext. 5002

Employment (채용)
Employee Benefits (직원 혜택)
Insurance (Employee) (직원 보험)
Personnel Records (인사 기록)
Student Enrollment Data (학생 등록 자료) - 330-7710

Superintendent (교육감)

Board of School Trustees (이사회)
Administrative Assistants (행정) - 349-4766
Foreign Student Admission Policies (외국인 학생 입학 규정)
Print Shop (인쇄소) - 330-7721
Student Records (학생 기록)

MONROE COUNTY COMMUNITY SCHOOL CORPORATION

2006-2007 학년도 학사 일정 안내

날짜	요일	학사 업무
8 월 14 일	월	교무 회의 (학생은 수업 없음)
8 월 15 일	화	교무 회의 (학생은 수업 없음)
8 월 16 일	수	학년 첫 수업일
9 월 4 일	월	노동절 (Labor Day) (수업 없음)
10 월 11 일	수	교직원 교육 (유치원 ~ 6 학년 수업 종료 12 시 40 분)
10 월 20	금	가을 방학 (수업 없음)
10 월 31 일-11 월 3 일	화 ~ 금	학부모 회의- 유치원 화요일: 유치원 오전반 수업 - 유치원 오후반 수업 없음 수요일: 유치원 오후반 수업 - 유치원 오전반 수업 없음 목요일: 유치원 오전반 수업 - 유치원 오후반 수업 없음 금요일: 유치원 오후반 수업 - 유치원 오전반 수업 없음
11 월 2 & 3 일	목 & 금	학부모 회의- 초등학교에 한함 (유치원 수업 없음; 1 학년-6 학년 수업 오전 9 시~11:30 분)
11 월 7 일	화	선거일 (수업 없음)
11 월 23 & 24 일	목 & 금	추수 감사절 (Thanksgiving Recess) (휴교)
12 월 22 일	금	1 학기(First Semester) 마지막 수업일
12 월 25 일 ~ 1 월 5 일	월 ~ 금	겨울 방학 (2 주일간 수업 없음)
1 월 8 일	월	2 학기 (Second Semester) 첫 수업일
1 월 15 일	월	Martin L. King, Jr., Day (수업 없음)
2 월 7 일	수	교무 회의 (학생은 수업 없음)
3 월 12 - 16 일	월 ~ 금	봄 방학 (수업 없음)
3 월 19 일	월	봄 방학후 첫 수업일
4 월 11 일	수	교직원 교육 (유치원 ~ 6 학년 수업 종료 12 시 40 분)
5 월 8 일	화	교무 회의 (학생은 수업 없음)
5 월 25 일	금	2 학기 마지막 수업일 (학생)
5 월 28 일	월	진몰 장병 추도 기념일 (Memorial Day) (휴교)
5 월 29 일*	화	학년 종료일 (교사)/ 보충 수업 예정일 (필요할 경우)
6 월 2 일	토	졸업식 (BHSN-오전 9 시 30 분, BHSS-오후 2 시)
미정		여름 학교(Summer School) 수업 시작**
7 월 4 일	수	독립 기념일 (Independence Day Recess, 수업 없음)
미정		초등학교 & 중학교 수업 종료
미정		고등학교 수업 종료
		* 주: 날씨관계로 휴교의 경우 수업보충을 위하여 등교, 수업보충이 불필요할 경우 수업 없음. 만일 추가 보충 수업이 필요할 경우 학년말에 추가 되며 학생과 교사의 마지막날이 조정됨.

	1 학기	2 학기	계
학생 등교 일수	88 일	92 일	180 일
교사 등교 일수	90 일	95 일	185 일

학교 일과 시간

유치원 오전 9:00 - 오전 11:30 (오전반)
 또는 오후 12:45 - 오후 3:15 (오후반)

1- 6 학년 오전 9:00 - 오후 3:15

7-12 학년 오전 8:00 - 오후 2:30

수업 보충 (영문판 16 페이지)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 학년말 (수업 보충일은 5 월 29 일, 5 월 30 일 등) 에 이에 대한 보충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2006-2007 년도 학사 일정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수업 보충에 관한 정보는 The Herald-Times 신문에 보도될 것이며 각 학교는 부모에게 이를 통지할 것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을 고려하실 경우 학년말의 수업 보충 가능성을 감안하여 6 월 2 일 이전의 계획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